

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20. 7. 28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원장
표철수 부위원장
허 욱 상임위원
김창룡 상임위원
안형환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에 의거, 의결사항 ‘가’, ‘나’, ‘다’, ‘라’, ‘마’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전에 해당됨.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심의 재심에 관한 건 -**(주)조선방송 <TV CHOSUN 뉴스특보>- (2020-43(서)-212)**

- (주)조선방송의 2020년 3월 9일자(13:00~15:00) 방송된 <TV CHOSUN 뉴스특보>의 ‘주의’ 처분결정에 대한 (주)조선방송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방송심의 재심에 관한 건 -**(주)공영홈쇼핑 <[PN풍년] 메가IH프라이팬 세트>- (2020-43(서)-213)**

- (주)공영홈쇼핑의 2020년 2월15일자(16:10~17:20) 방송된 <[PN풍년] 메가 IH 프라이팬 세트>의 ‘경고’ 처분결정에 대한 (주)공영홈쇼핑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-(주)조선방송- (2020-43(서)-214)

- 제2017-3차 방송통신위원회(2017.1.24.)에서 의결한 과태료 부과(안)과 관련하여, (주)조선방송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.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(주)조선방송	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의2제5항, 「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5조제1항	6,500만원

라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-터너코리아(유)- (2020-43(서)-215)

- 「방송법」 제73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터너코리아(유)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.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터너코리아(유)	「방송법」제73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제1항	500만원

마.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-(주)전주방송 등 2개사- (2020-43(서)-216~217)

-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·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60조제2항 및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를 위반하여 협찬고지 한 (주)전주방송 등 2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.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(주) 전주방송	「방송법」제74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60조제2항제2호	1,000만원
한국소비자티브이(주)	「방송법」제74조제2항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제11조제3항제1호	630만원